

2025년도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소개

- 공 고 명 : 2025년도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입주기업 상시모집
- 사업목적 : 세종시 유망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시설개요
 - (시 설 명)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 (운영기관) (재)세종테크노파크
 - (규 모) 부지 4,669㎡, 연면적 11,594㎡(지하1층, 지상7층)
 - (주차대수) 86대 ※ 지상 21대, 지하 65대
 - (주요시설)
 - 공용공간 : 근린생활시설(4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
 - 입주기업공간 : 40실 / 1~4층 / 1실당 10평, 20평 규모
 - (재)세종테크노파크 사무실 : 4~5층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세종테크노파크

2

모집 개요

□ 모집규모: 총 11개실 내외 (지상 1~4층)

- 지상 1층 3개실, 2층 4개실, 3층 1개실, 4층 3개실 중 신청에 따라 모집

□ 선정 기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 선정

□ 입주기간: 최초 3년, 최대 7년(연장·재연장 각각 2년)

□ 모집대상

- (기업) 세종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 / 5+1 미래전략산업** 유망기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방송영상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양자, 정보보호

- (기관) 경제산업 혁신기관 및 경제산업 법정단체 등*

* 국가·공공기관·공익법인, 기술금융기관, 기술사업화 업무 전담조직, 과학기술 사업화 관련 단체 등 ※입주희망 '기관'은 경영지원실로 별도 사전문의(044-850-2195)

<우대 및 제외사항>

• 우대사항

- 최근 3년간(22년~24년) 평균 매출 5억원 이상 또는 공고일 기준 1년간(24.3.~25.2.) 5만\$ 이상 수출기업
- 타 지역 전입기업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우수기업(해당 BI 센터장 추천서 제출기업에 한함)
-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부설기업연구소 보유, 특허 5건 이상 보유기업/조건 중 1개 이상 해당기업

• 제외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약취방지법」에 의한 약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 * 특정유해물질 발생 업종(도금업, 도장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하는 업종(염색, 피혁, 제지업 등), 대기오염 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사업자
-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타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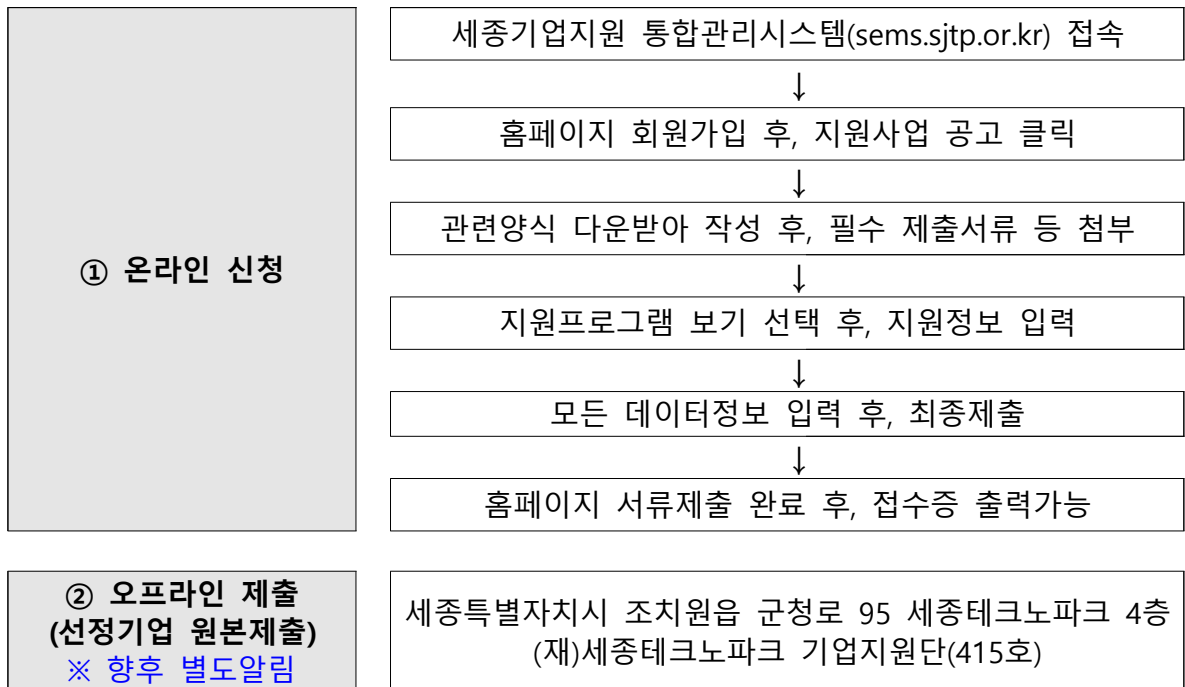
접수 및 추진 일정

□ 모집기간

- 공고기간 : 2025. 5.30.(금)부터 입주 완료시까지
- 접수기간 : 2025. 6.2.(월)부터 입주 완료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우편·방문 접수 불가

- 접수처 :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ems.sjtp.or.kr>)



※ 온라인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건만 인정(접수 누락은 신청인 책임)

- 제출양식 : 세종TP 홈페이지(www.sjtp.or.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추진절차

- 매월 1~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익월 10일 이전 선정평가 실시
- (입주신청서 접수) 매월 1일~말일
- (신청서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선정평가 결과 통보) 평가 후 5일 이내
- (계약체결 및 입주) 선정평가 결과통보 후 30이내 입주 必

4

선정 기준

□ 선정방법

-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SEMS)을 통해 접수된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심사
- 평가지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가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 선정
 - * 70점 미만인 기업 중 최고점을 획득한 기업(기관)을 예비기업으로 선정(기선정된 기업 중 입주 포기 발생 시 추가 입주 가능)

□ 평가항목

- (평가기준) 성장성(10점), 재무안정성(10점), 사업계획(30점), 경쟁력(30점), 고용창출(20점) 등에 대하여 평가
- (우대가점)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각 1점씩 최대 5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내 용	배점
정량 (20점)	성장성 (10점)	매출액증가율	◦ 성장흐름과 가능성 판단	5
		영업이익 증가율	◦ 기업의 수익성 판단	5
	재무안정성 (10점)	자기자본비율	◦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5
		유동비율	◦ 기업의 유동성 판단	5
정성 (80점)	사업계획 (30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기대효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30
	경쟁력 (30점)	기업전문성	◦ 기술 및 제품 개발 성과 등 기업전문성	15
		사업화 수준	◦ 기술·제품·서비스등 사업화 수준에 대한 평가	15
고용창출 (20점)	고용창출계획	◦ 청년 및 신규인력 채용 계획에 대한 평가	20	
합 계				100
가 점 (5)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부설기업연구소 보유, 특히 5건 이상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기업			1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5억원 이상 또는 공고일 기준 1년간 5만\$ 이상 수출기업 중 1개 이상 해당기업			1
	타 지역 전입기업			1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우수기업			1
	청년친화강소기업			1
총 계				105

5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 목록		비 고
공통 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약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체크리스트	각 1부	붙임 양식 활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년도 재무제표	1부	국세청 발행 2022년도~2024년도(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기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추가 서류	우대가점 확인 증빙서류	1부	인증서,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 * 특허등록원부, 수출입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창업보육센터장 졸업기업확인서(직인날인본)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기업에 한함(www.work.go.kr 확인)

※ 입주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입주 전 유의사항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 제외 함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 4항 참고]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 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입주 후 유의사항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 양도,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 불가, 위반 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입주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함
- 건물 내·외벽에 입주기업별 회사명,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 불가
- 입주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각종 집기, 변경 등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투자금, 권리금, 계약변경 요구권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생산시설 등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자가 모두 부담
-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비용을 입주보증금(보증보험)등에서 변제 조치함
- 법령, 재산평가액 변화, 물가 등에 따라 입주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가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된 입주 부담금에 연체이자율(연10%)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 납부해야 함
- 입주기업은 위 사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운영기관의 세종테크노파크 관리·운영계획 및 관리 규정,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수도광열비 등 실비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가입 필수 (입주계약시 자동이체 신청서 제출)

7

문의처

분야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모집공고 및 선정평가 제출서류, 접수여부 확인, 평가일정 등	윤지희 선임	044-850-2143	joy@sjtp.or.kr
신청접수 시스템(SEMS) 입주신청서 등록 오류 등 시스템 활용	(주)테크 인사이드	02-3471-2753	-
입주시설 및 계약 입주공간, 시설 사용료, '기관' 입주 관련 문의	최현우 사원	044-850-2195	hwoo3731@sjtp.or.kr

붙임

제출서류 양식

1. 입주신청서 양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
3. 서약서 양식
4.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양식
5. 신청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참고

참고자료

1. 주축산업 및 미래전략산업 KSIC 코드
2. 입주부담금 납부 기준표
3. 중소기업 범위 기준